

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5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3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통일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지원사업 등(안 제3조)

- 통일교육,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
-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
-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다.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(안 제4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7,820천원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6. 1. 19. ~ 2026. 2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평창군 공고 제2026-127호, [행정담당관-2004(2026.1.16.)호]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076(2026.1.15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076(2026.1.15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863(2026.1.13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757(2026.2.11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3436(2026.2.25.)호]

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조직된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란 민족역량 강화,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 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 등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통일교육,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
2.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
3.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1.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
2.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
3.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
4. 과거 사업의 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의 적정성

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는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통일교육 지원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, 통일문제연구의 진흥,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지원,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·보급,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(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3조: 평창군수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1. 통일교육,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
 2.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
 3.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
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,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 시 균
연락처	(033) 330 - 2210